

권력기관 개혁의 성과와 과제

이국운

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

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



목 차

1. 권력기관 개혁의 당위와 필요성
2.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현황
3.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 맥락
4. 공화주의 형사사법개혁론
5. 권력기관 개혁의 과제

1. 권력기관 개혁의 당위와 필요성

I. 국민주권의 실현

- “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” (헌법 제1조 제2항)

II. 기본적인 권의 보장과 다원적 삶의 제도적 보호

- “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.” (헌법 제10조 제2문)
- The Spheres of Justice & Liberal Democracy as the Art of Separation (M. Walzer)

III. 권력의 부패 경향성 대처 및 형사사법권력의 최후수단성 확보

-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. (Lord Acton)
- 형사사법권력은 국민국가의 중추이나, 보충적인 최후수단으로 철저히 계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, 오남용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매우 어려움
- 자유민주주의의 명제: “견제 받는 정부가 견제 받지 않는 정부보다 더 강하다!”

IV. 법치(法治)의 인치화(人治化)에 대한 경계와 예방

- 법치(rule of law)는 법에 의한 인치(rule of ruler by rule)로 타락할 경향 농후
- 따라서 법치의 성공은 법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가(legal staff, Weber)의 문제에 좌우될 수 있음
- 이들 역시 피치자(the governed)와 동일한 법에 의한 통치를 받도록 해야 함

V. 사회변화의 반영과 대응

- 인터넷을 모르는 87년 헌법 하의 권력기관 거버넌스
- 민주적 공고화, 래디컬 글로벌리제이션, 4차산업혁명, 탄소중립 에너지 대전환 etc

2.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현황

I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

- 2020년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검찰의 수사기소독점구조 변화
- 2020년 1월 24일 : 초대 공수처장(김진욱) 임명으로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공식 출범
- 판사, 검사,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공직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권한도 보유
- 소규모(검사 25명 이내), 수사 및 기소 관할 혼란 등 문제 존재
- 그러나 파수꾼들의 파수꾼(Watchmen's Watchman)의 위상은 명확

II.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

- 2020년 2월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공포로 수사권 다원체제(공수처, 검찰, 경찰) 출범
- 검찰과 경찰의 협력관계,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,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,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수사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취급 예정(2022년 1월 1일부터)
-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는 부패, 경제, 공직자, 선거, 방위사업,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
- 관련 후속 대통령령 및 각 부령의 제개정 완료

III.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인사제도 정비

- 비검찰출신 법무부장관 임명(박상기-조국-추미애-박범계) 및 법무부 주요 보직의 비검찰화
- '검사인사규정' '검사복무평정규칙' '검사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' 등 제개정
- '검사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' 제정으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
- 검사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을 3인에서 5인으로 확대,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에 검사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추천 권한 부여, 고위직 검사들의 비위에 대한 감찰 전담부서(대검 감찰 3과) 신설 등

2.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현황 (계속)

IV.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자치경찰제 시행

- 2020년 12월 '일원화' 모델 경찰법, 경찰공무원법 개정
- 경찰사무의 3분 및 지휘감독체계 분리
 - 국가경찰사무(경찰청장), 수사사무(국가수사본부장), 자치경찰사무(시도자치경찰위원회)
- 국가수사본부는 모든 수사기능 통합, 직접수사기능 강화 및 수사종결 역량 확보
 - 수사기획조정관 및 수사인권담당관 신설, 보안국을 안보수사국으로 개편
- 2021년 7월 1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
 - Yet, "자치경찰관서도 자치경찰관도 없는 자치경찰제"라는 비판 상존

V. 인권중심 치안행정 확립 및 정보경찰 제도 정비

- 경찰청의 '인권영향평가제' 도입('18.6)
- 법무부의 '인권보호수사규칙' 제정('19.10)
 - 장기간 조사와 심야 조사 제한,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 금지, 출석조사 최소화 및 출석요구사실 기록의무, 중요사건 수사 시 신속하고 충실한 보고 의무 등 규정
- 경찰청의 '경찰관 인권행동강령' 제정('20.6)
 - 사건 관계인의 방어권 내실화, 수사민원상담센터 설치, 수사관련 사전접촉금지제도 운영, 영상녹화 확대, 진술녹음 도입 등
- 정보경찰의 규모 축소 및 조직 개편: 준법지원계 신설과 분실 폐쇄 등
- 관련 법률 개정으로 정보활동의 범위 명확화 및 정치관여금지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 신설
- 2020년 3월 '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'(대통령령) 제정

VI.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업무 폐지,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('24.1.1 예정)

3.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 맥락 1: 식민지 형사사법기구와 국가주의 개혁

I. 문제의식

-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작업은 식민지 시대 이래의 형사사법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시도
- 그 성과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 및 평가할 필요 多

II. 식민지 형사사법기구의 특징

- 자의성, 폭력성, 신분제적 성격, 부패친화경향 등
- 일제 말기 검찰관형사사법체제의 구상과 실패

III. 해방공간에서 미군정과 협상한 조선인 법률가들의 선택

- 행정부 소속의 검찰을 법원조직에 부치(附置)하여 준사법기관화
- 검찰관이 형사사법의 모든 권한(수사개시권, 수사감독권, 수사종결권, 영장청구권, 기소권, 불기소권)을 편의적으로 독점하는 독특한 형사사법체제
-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대표되는 일사불란한 조직의 구성원이나 법관과 방불한 신분적 특권 향유
- 1948년 기준 약 150명 정도인 검사집단에게 사실상 형사사법의 전권을 맡긴 선택(엘리트 사법관료주의)
- Yet, 식민지 형사사법기구의 청산 미진, 형사사법과정에 관한 미군정의 실질적 개입 불가능(언어, 법계)
- 검찰형사사법체제는 사법시스템을 이미 차지한 조선인 법률가들이 미군정에게 내세운 유일 대안

IV. 국가주의 개혁의 관건

- 해방공간에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제는 일종의 국가주의 개혁의 명분 하에 탄생
- 개혁의 성패는 극소수 엘리트 사법관료집단인 검찰이 스스로 공명정대하고 청렴하며 용감하게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좌우될 수밖에 없었음

3.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 맥락 2: 국가주의 개혁의 좌절, 왜곡, 일탈

I. 국가주의 개혁의 좌절

- 남북의 이념대결, 한국 전쟁의 과정에서 국가주의 개혁 시도는 제대로 진척되지 못함
- 한국 전쟁을 전후하여 과대 팽창한 軍 관련 정보권력기구들은 검찰관형사사법체제를 압도

II. 국가주의 개혁의 왜곡

- 1961년 5월 16일 발생한 군사 쿠데타는 검찰관형사사법체제를 왜곡
- 군사정권은 기존 형사사법기구 상위에 '혁명재판소, 혁명 검찰부' 등을 설치
- 중앙정보부를 조직하여 정보권력기구 위주의 통치 전개
- 이 과정에서 국가주의 형사사법체제의 중추인 검찰은 군사정권에 맞서기보다 주어진 정치상황에 적응
- 후일 이와 같은 검찰의 경로선택은 군사정권에 대한 형사사법적 과거청산과정에서 재등장
 - “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.” (1995. 7. 18. 5.18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 중)

III. 국가주의 개혁의 일탈

- 해방공간에서 검찰에 참여했던 조선인 법률가(변호사)들은 1960년대부터 다시 개업변호사로 복귀
- 전관변호사는 희소성 및 형사사법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단기기간이 큰 수익 확보(전관예우)
- 1950년대부터 고시(고등고시사법과-사법시험)를 통해 임용된 신규사법관료들도 전관예우 관행 답습
- 법률가양성의 엄선주의는 식민지 형사사법기구의 신분제적 특성과 부패친화경향의 재연을 부채질
- 이 과정에서 군사정권의 강권 통치를 형사사법으로 뒷받침하고 심지어 집권 연장에 법적 논리를 제공하는 일부 정치 검사들도 출현

3.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 맥락 3: 민주화와 국가주의 형사사법의 강화

I. 민주화의 역설

- 민주화 과정에서 검찰 중심의 국가주의 형사사법기구는 기본적으로 군사정권을 방어하는 입장
- 검찰이 민주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음
- 그러나 흥미롭게도 민주화를 통해 검찰 중심의 국가주의 형사사법은 갈수록 강화되는 역설 발생

II. 복고적 민주화를 통한 국가주의 형사사법의 복원

- 그 이유는 1987년 민주화를 상징하는 현행 제9차 개정 헌법의 복고적 성격 때문
- 현행 헌법은 군사정권 이전의 국가체제를 복원하려는 경향 농후
- 따라서 해방공간에 설계된 검찰 중심의 국가주의 형사사법이 복원되는 것은 당연

III. 검찰의 특별수사와 실질적인 권력 중추화

- 민주화 이후 검찰은 1989년의 '범죄와의 전쟁'을 기점으로 조직적인 특별수사역량을 축적
-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과거청산재판, 역대 대통령의 가족 및 측근 부패 게이트, 주요 선거의 자금 수사를 비롯한 각종 정치비리 수사, 주요 재벌 및 사회집단의 위법의혹 수사 등을 직접 진행
- 대부분의 정쟁거리를 경쟁적인 고소고발을 통해 형사사법과정으로 회부하는 '정치의 형사사법화 경향'은 검찰을 한국 사회에서 실질적인 권력 중추로 옹립

IV. 검찰개혁과 국가주의 형사사법의 강화

- 이 과정에서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이유로 을 제어하기 위하여 각종 검찰개혁방안의 시도
 - 검찰총장 임기제,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제도, 십여 차례의 특별검사, 대검의 직접 수사기능 폐지 등
- 그러나 심지어 이와 같은 개혁 방안마저 국가주의 형사사법의 강화에 기여

3.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 맥락 4: 자유주의 개혁 담론의 등장과 한계

I. 국가주의 개혁의 기회

- 민주화와 국가주의 형사사법의 강화라는 역설적 상황은 검찰에게 국가주의 개혁의 기회를 제공
- 검찰은 특히 검찰 출신 전관변호사를 포함한 이른바 '검찰 식구'에게 더욱 공명정대하고 청렴하며 용감하게 형사사법권한을 행사하고, 조직 문화를 혁신함으로써 국가주의 개혁을 추진해야 했음

II. 검찰의 개혁 외면과 국민적 불신의 심화

- 그러나 검찰은 전관예우 문제 등에 관하여 엄격한 자정 노력을 외면, '정치의 형사사법화 경향'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확대했으며, 이 과정에서 검찰의 전현직 구성원들이 각종 추문과 사건에 연루
-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심화, 조직 내의 정치적 균열, 국가주의 개혁의 명분과 동력 상실

III. 자유주의 개혁 담론의 등장

- 이처럼 국가주의 개혁이 실패하면서, 자유주의 개혁이 대안으로 등장
- 자유주의 개혁은 개인의 인권, 특히 '피의자/피고인의 인권 보호'를 중시
- 자유주의는 검찰 중심 형사사법기구의 문제점, 특히 식민지 시대 이래의 관성인 자의성, 폭력성, 신분제적 성격, 부패친화경향 등을 형사사법권력의 대상인 피의자/피고인의 관점에서 탁월하게 드러냄

IV. 자유주의 개혁 담론의 한계

- 그러나 형사사법의 재제도화를 완결하기에 자유주의 개혁 담론은 일정한 한계를 내포
- 형사피해자에 대한 무관심과 배제, 법률가 중심의 형사사법 운영, 형사적 치유 역량의 상실, 바람직한 삶과 좋은 사회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의 약화 등
- 결정적으로 자유주의 개혁 담론은 공권력의 정당성을 전면적으로 확보해 주기 어려움

3.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 맥락 5: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의 관계

I. 적폐청산과 검찰권력의 극대화

- 2016-7년 촛불 시위 전후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기구는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강력한 권력 행사
- 이러한 권력 수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적폐청산 국면에서도 지속
-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 농단 수사에서는 법원의 인사관행에까지 형사사법권력 행사
-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검찰권력이 최고조에 오른 것을 의미

II. 문재인 정부의 파란만장한 검찰 개혁

-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바로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추진
- 특히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기구를 제도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,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법제화는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여러 고비를 거쳐 진행
- 2019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경과를 현황 참조

III.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아우를 형사사법개혁비전의 필요성

- 이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검찰 주도의 적폐청산과 법무부 주도의 검찰개혁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형사사법개혁의 일관된 비전이 제시되지 못한 것
- 검찰 스스로에게 국가주의 개혁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, 자유주의 개혁 담론의 요청을 수용하며, 나아가 자유주의 개혁 담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관점과 프로그램의 필요성
- 이러한 형사사법개혁비전 속에서 형사사법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검찰 중심 국가주의 형사사법의 재제도화를 완결할 수 있음

“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.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...(중략)...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.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, 부족한 점을 살피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...”

2019년 10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보좌관회의 모두 발언 중



4. 공화주의 형사사법개혁론

I. 공화주의의 핵심

- 진정한 자유는 공공선을 향한 정치적 참여를 통해 가장 잘 실현
- 권력은 (인치가 아니라) 법치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구조로 조직될 때만 건강
- 시민적 견제력의 확보와 행사가 정치의 관건이며, 이를 통해 시민적 덕성이 발생하고 계승

II. 공화주의 형사사법의 목적

- 형사사법의 목표는 피해자, 피의자/피고인, 법률가, 배심원을 비롯하여 정치공동체의 시민 모두가 범죄를 통해 훼손된 자유를 회복하는 것
- 형사사법과정의 참여자는 모두 동등한 존중을 받을 자격을 가진 시민
- 형사절차는 시민 모두가 악의 확인과 처벌을 통한 정의의 실현, 교정과 사회복귀를 통한 자유의 회복과 정치공동체의 재건을 함께 경험하는, 역동적인 공동교육현장
- 형사사법은 '훼손된 자유의 회복과정'을 통해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정치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

III. 법치의 실현과 법률가지배의 극복

- 이를 위해서는 누구도 자의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법치의 구조로 형사사법시스템을 구축해야
- 형사사법과정 안팎에 거시적/미시적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세심하게 고안해야
- 특히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률가들도 시민들과 동일한 법을 적용되도록 해야
- 법률가지배는 법치가 법을 통한 인치로 타락한 모습이므로 반드시 극복해야

IV. 시민적 견제력의 확보와 행사

- 형사사법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므로 국민주권의 실현에 예외가 될 수 없음
- 형사사법에 대한 시민 참여의 확대와 강화, 형사사법시스템을 운영할 인재의 양성과 확보가 모두 중요

5. 권력기관 개혁의 과제 1: 수사권 다원화와 형사사법 新거버넌스

I. 수사권 다원화

- 2021년은 수사권 다원화의 실질적 원년
 - 공수처 출범,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확보,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, 검찰의 직접수사권 유지 및 제한
- 수사권 다원화는 종래의 검찰관형사사법체제를 대체할 형사사법 新거버넌스를 요청

II. 사실판단의 전문화 경향

- 수사권 다원화는 현대 사회에서 사실판단의 전문화 경향과 병행
 - 현재도 의료, 군사, 조세, 금융, 노동, 지적 재산, 국제상사, 사이버, 방역 등 전문 영역은 해당 분야의 사실 판단에 정통한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
 - 수사검사도 해당 영역의 사실 판단 전문가이거나 그 도움이 없으면 실질적인 수사 불가능
- 종래의 체제는 사실판단의 전문성이 없는 검사가 수사의 전권을 행사
- 검찰조직 내부에서 도제수습을 통해 수사역량을 갖추더라도 객관적인 검증은 곤란

III. 사실판단과 법률판단의 분리 필요성

- 수사권-기소권 분리는 비대한 검찰권력의 분할보다 사실판단과 법률판단의 합리성 증대로 정당화해야
- 사실판단인 수사는 전문 역량을 갖춘 수사관에게 맡기고, 법률가는 형사과정의 각 단계에서 법률판단을 기초로 수사 상황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가야

IV. 형사사법의 新거버넌스

- 수사는 전문수사관과 전문수사기구에게, 수사감독은 각 수사기관의 내부 통제와 법률가기구의 외부 통제
- 긴급한 인권침해상황에 대처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보충적인 수사감독권을 부여할 필요 있음

5. 권력기관 개혁의 과제 2: 수사기구 전문화와 수사인력 양성



I. 수사기구 전문화의 필요성

-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전문영역의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만큼 빈도와 중요성이 높아짐
- 법률가수사기구인 검찰이 주도하고 일반형사사건의 수사기구인 경찰이 보조하는 종래의 형사사법체제는 수사기구의 전문화에 상대적으로 취약, 실질적인 수사지휘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
- 오히려 전문행정조사-특별사법경찰-일반사법경찰-검찰의 단계에서 중복수사로 인한 수사역량의 낭비와 피의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

II. 특별사법경찰과 수사기구 전문화

- 수사권 다원화 이후 수사기구 전문화는 일단 종래의 특별사법경찰 영역에서 출발할 필요
 - 선거, 금융, 조세, 공정거래, 노동, 산업안전, 소방, 환경, 건축, 마약, 식품, 방역, 소방, 산림, 출입국, 사이버, 해상, 항공, 철도 등
- 면밀한 현황 조사와 미래 예측을 통해 두 분야로 구분하여 수사기구 전문화를 추진해야
 - 검찰, 경찰 등 기존 수사기구의 전문성 강화로 충분한 분야
 - 특별사법경찰을 별도의 전문 수사기구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분야

III. 자치경찰의 강화

- 수사기구의 전문화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위임된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자치경찰에 이양하는 방안 고려해야
-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'민생경찰' 등의 명칭으로 운영 중인 특별사법경찰단을 자치경찰과 통합할 수도

IV. 수사인력의 양성

- 수사기구 전문화는 전문 수사인력 양성 없이 불가능
- 일반사법경찰 및 특별사법경찰의 자격요건과 임용방식, 교육훈련 등을 전문성 강화 관점에서 재검토해야

5. 권력기관 개혁의 과제 3: 형사사법과정에서 시민적 자치의 강화

I. 현행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우려

- 권력기관 개혁 중 자치경찰제는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큼
- 국가경찰로부터 조직 분리 없이, 자치사무에 관련된 행정경찰의 권한만 부여했기 때문
- 형사사법에 대한 권한이 전무한 자치경찰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움

II. 자치경찰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조직 분리

- 앞서 언급한 대로 광역자치단체에 위임된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이양과 특별사법경찰단의 통합 검토 필요
- 나아가 국가경찰의 형사사법권한 일부를 자치경찰에 위임할 필요도 있음
- 이 과정에서 국가경찰로부터 자치경찰을 조직적으로 분리해야

III. 형사사법과정에서 시민적 자치의 강화 방안

- 시도경찰위원회의 구성에서 시민적 참여 확대
- 영장청구권, 공소권, 공소유지권을 가지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주민직선제
- 형사대배심(기소배심)의 시행 및 형사심리배심의 권한 강화

IV. 헌법 개정의 필요성

- 자치의 범위를 '법령의 범위 안'으로 국한하고, 기본권제한의 법률주의를 고수하는 현행 헌법의 개정 필요
- 형사사법 관련 주요 헌법 개정 필요 사항
 - 자치입법권의 범위 안에 일정 범위의 처벌규정 제정권 포함
 - 자치입법의 해석에 관한 자치사법권 및 자치입법의 처벌규정에 관한 1차적 사법경찰권 부여
 - 자치입법사항에 대한 국회의 입법위임의무 조항 신설

5. 권력기관 개혁의 과제 4: 형사사법 생태계의 미시적 권력 균형

I. 형사사법에서 미시적 권력 균형의 중요성

- 형사사법의 新거버넌스는 각 형사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참여 주체들의 미시적 권력 균형으로 이어져야
- 형사사법 생태계의 미시적 권력 균형은 형사사법시스템 안팎의 헤게모니와 문화적 억압기제를 해체

II. 피의자/피고인, 피해자의 절차적 권한 강화

- 피의자/피고인의 절차적 방어권 확대
 - 국선변호 및 공공변호인 제도의 확대, 변호인의 수사절차 참여 실질화 등
-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 변호인 제도의 대폭 확대

III. 형사사법기구의 조직 문화 혁신

- 인권 감수성과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수사인력 양성
- 처벌을 통한 정의의 실현과 교정의 성공으로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공화주의 형사사법의 목표 공유
- 전문 수사기구와 법률가조직(검찰-법원)의 역할 분담 및 상호견제 관계 확립
- 형사사건 관련 언론 보도의 프로토콜 확립

IV. 형사사법기구의 부패 생태계 차단

- 수사기구와 법률가조직(검찰-법원) 주변의 부패사슬 단절
- 각 전문 수사기구의 내부 통제 강화 및 비위 행위에 대한 엄벌 관행 확립

V. 형사사법비용의 공영화

- 어려운 피해자, 피의자/피고인에 대한 법률구조제도 확대
- 법률사회보험의 도입 필요성 검토

감 사 합 니 다

